

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0. 8. 13 선고 2019가단862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B

피 고 1. C

2. D

3. E

4. F

5. G

피고 3 내지 5의 소송대리인 D

변론 종결 2020. 7. 9.

판결 선고 2020. 8. 13.

주 문

1. 피고 C은 원고에게,

가. 충청남도 부여군 H 답 132㎡ 중 별지 감정참고도 표시 9, 11, 12, 13, 10,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'ㄹ'부분 지상 목조 기와지붕 단층 주택 1동 52㎡를 철거하고, 위 52㎡를 인도하며,
나. 3,988,490원 및 2020. 1. 1.부터 위 토지인도일까지 월 84,32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
2. 피고 E, D, F, G은 원고에게,

가. 충청남도 부여군 I 답 354㎡ 중 별지 감정참고도 표시 1, 2, 3, 4, 5, 6, 1의 각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'ㄱ'부분 지상 목조 스테트지붕 단층 무허가 주택 1동2㎡를 철거하고, 위 2㎡를 인도하며,

나. 충청남도 부여군 H 답 132㎡ 중 별지 감정참고도 표시 3, 7, 8, 4,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'ㄴ'부분 지상 목조 스테트지붕 단층 무허가 주택 1동 5㎡및 같은 감정참고도 표시 7, 9, 10, 8,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'디'부분통로 6㎡를 각 철거하고, 위 'ㄴ, 디'부분 11㎡를 인도하며, 나. 각 248,271원 및 2020. 1. 1.부터 위 ㄱ, ㄴ, 대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 각 월5,246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.

3. 원고의 피고 E, D, F, G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.

4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5. 제1,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 제1항, 제2의 가, 나항 및 피고 E, D, F, G은 원고에게 각 249,280원 및 2020. 1.1.부터 충청남도 부여군 I 답 354㎡ 중 별지 감정참고도 표시 1, 2, 3, 4, 5, 6, 1의 각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'ㄱ'부분 2㎡', H 답 132㎡ 중 별지 감정참고도 표시 3, 7, 8,4,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'ㄴ'부분 5㎡ 및 같은 감정참고도 표시 7, 9, 10,8,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'디'부분 6㎡의 인도일까지 각 월 5,27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충청남도 부여군 H 답 132㎡(이하 '이 사건 H 토지'라 한다)에 관하여는 2015.7. 31.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, I 답 354㎡(이하 '이 사건 I 토지'라 한다)에 관하여는 2015. 7. 31. 원고 및 소외 B 명의로 각 1/2지분씩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.

나. 충청남도 부여군 J 지상 목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29.42㎡(이하 '이 사건 J 지상주택'이라 한다)에 관하여는 2004. 4. 10. 소외 K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17. 10. 30.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.

다. 충청남도 부여군 L 지상 주택(이하 '이 사건 L 지상 주택'이라 한다)은 피고 E, D, F, G의 선친이 1978.경 취득하여 피고들의 모친인 소외 M이 거주하여 오다가 2018. 10. 30. 사망하여 피고 E, D, F, G이 공동상속하였다.

라. 그런데 이 사건 J 지상 주택이 이 사건 H 토지 지상 별지 감정참고도 표시 9, 11, 12, 13, 10, 9를 순차 연결한 선내 'ㄹ'부분 52㎡(이하 '이 사건 'ㄹ'부분'이라 한다)를 침범하여 축조되어 있고, 이 사건 L 지상 주택이 이 사건 H 토지 중 별지 감정참고도 표시 3, 7, 8, 4, 3을 순차 연결한 선내 'ㄴ'부분 5㎡(이하 '이 사건 'ㄴ'부분'이라 한다) 및 이 사건 I 토지 중 별지 감정참고도 표시 1, 2, 3, 4, 5, 6, 1을 순차 연결한 선내 'ㄱ'부분 2㎡(이하 '이 사건 'ㄱ'부분'이라 한다)를 침범하여 축조되어 있으며, 같은 감정참고도 표시 7, 9, 10, 8, 7을 연결한 선내 'ㅂ'부분 6㎡(이하 '이 사건 'ㅂ'부분'이라 한다)가 통로로 이용되고 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3, 4, 6호증의 각 기재,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부여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

자백간주 판결 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

3.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들이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I, H 토지를 적법하게 점유할 권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'ㄱ, ㄴ, ㄹ'부분을 각 철거하고 그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,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2015. 7. 31.부터 위 각 부분 토지 인도완료일까지 사용료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.

나아가 부당이득의 반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, 감정인 N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, 이 사건 'ㄱ'부분에 대한 2015. 7. 31.부터 2016. 6. 30.까지의 월 임료는 2,500원, 2016. 7. 1.부터 2017. 6. 30.까지의 월 임료는 2,650원, 2017. 7. 1.부터 2018. 6. 30.까지의 월 임료는 2,820원, 2018. 7. 1.부터 2019. 6. 30.까지의 월 임료는 3,020원, 2019. 7. 1.부터 2019. 12. 31.까지의 월 임료는 3,13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, 그 이후의 사용료 상당 부당이득금은 월 3,130원 상당일 것으로 추인되며, 이 사건 'ㄴ, ㄷ'부분에 대한 2015. 7. 31.부터 2016. 6. 30.까지의 월 임료는 14,264원($=81,690\text{원} \times 11/63\text{㎡}$, 원미만 버림, 이하 같다), 2016. 7. 1.부터 2017. 6. 30.까지의 월 임료는 15,070원($=86,310\text{원} \times 11/63\text{㎡}$), 2017. 7. 1.부터 2018. 6. 30.까지의 월 임료는 16,096원($=92,190\text{원} \times 11/63\text{㎡}$), 2018. 7. 1.부터 2019. 6. 30.까지의 월 임료는 17,196원($=98,490\text{원} \times 11/63\text{㎡}$), 2019. 7. 1.부터 2019. 12. 31.까지의 월 임료는 17,856원($=102,270\text{원} \times 11/63\text{㎡}$)이고, 그 이후의 월 임료 역시 위 금액 상당일 것으로 추인된다. 993,084원($=2,500\text{원} \times 1/31\text{일} + 2,500\text{원} \times 11\text{개월} + 2,650\text{원} \times 12\text{개월}$ 계산하면, 이를 $+2,820\text{원} \times 12\text{개월} + 3,020\text{원} \times 12\text{개월} + 15,070\text{원} \times 12\text{개월} + 16,096\text{원} \times 12\text{개월} + 17,196\text{원} \times 12\text{개월} + 17,856\text{원} \times 6\text{개월}$)이 된다 할 것이고, 위와 같은 부당이득금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이긴 하나 원고가 이를 균분하여 구하고 있고 피고들에게 불리하지 아니하므로,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48,271원($=993,084\text{원} \times 1/4$)과 2020. 1. 1.부터 이 사건 'ㄱ, ㄴ, ㄷ'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 각 월 5,246원($=20,986\text{원} (=3,130\text{원} + 17,856\text{원}) \times 1/4$)의 비율에 의한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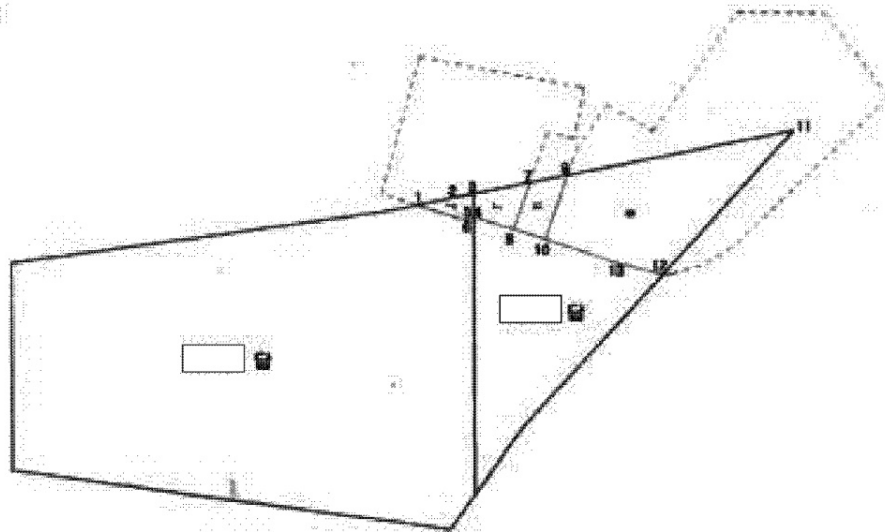
4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,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.

판사 이정재

감 정 참 고 도

1
 위치 소재 : 부여군



범례	명칭
————	해당 필지 내 건물선
-----	해당 필지 밖 건물선

명칭	면적(㎡)	부호	비고
ㄱ 부분	2	1,2,3,4,5,6,1을 연결한선내	건물
ㄴ 부분	5	3,7,8,4,8을 연결한선내	건물
ㄷ 부분	6	7,8,10,8,7을 연결한선내	통로
ㄹ 부분	52	8,11,12,13,10을 연결한선내	건물

* 본 도면을 일의 속적이고 속형에 사용할 수 있으며 광고도록 활용하시기 바랍니다

